

강남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(가칭) 민간위탁 동의안

심사보고서

2023. 10. 13.

행정재경위원회

의안 번호	252
----------	-----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9. 27. 강남구청장(일자리정책과) 제출
나. 상정의결
- 제3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 (2022.10.13.)
“원안가결”

2. 제안설명 요지(기획경제국장 : 정찬식)

가. 제안이유

- “강남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(가칭)” 는 신중년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여 새로운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재취업에 필요한 직무능력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조성한 센터로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법인, 단체 등에게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승인 및 동의)에 따라 강남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위탁사무명 : 강남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(가칭) 민간위탁 사업
-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 - 추진근거

- ▶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, 제6조, 제8조

- ▶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3조
- ▶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- 추진필요성 :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사무는 민간의 전문지식 및 다양한 경험, 노하우를 활용하여 신중년 세대의 새로운 일자리 진입을 돕는 취·창업 교육 및 취업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,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인(단체)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

○ 위탁사무의 내용 및 범위

- 강남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
- 프로그램 운영(취·창업 교육, 컨설팅, 인턴십, 일자리 발굴·연계, 사회활동 지원 등)
- 국내외 기업, 공공, 민간자원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
- 창업지원 및 사후관리(교육, 자금, 판로지원 등)
- 그 밖에 신중년 일자리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무 등

○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43, 더피나클강남 지하2층
- 규모 : 230.3㎡(69.7평)
- 위치도

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시설 현황도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위치></p>

- 위탁기간 : 2024. 1. 1. ~ 2025. 12. 31.(2년)
- 수탁기관 선정방식 :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·결정
-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: 765,184천원
- 관계법령
 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, 제6조, 제8조
 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」 제3조
 - 「서울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조성수)

- 본 동의안은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등을 근거로 향후 2년간('24년~'25년) 연간 예산 765,184천원의 예산으로, 신중년 직업훈련 등의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,
 - 구의회 의결을 얻으면, 수탁자 공개모집 후,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수탁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계약 체결할 계획을 담고 있음.
- 일반적으로 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고,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(지방자치법 제117조, 사무의 위임 등, 제2항 및 제3항).
 - 이 경우, (민간)위탁을 추진하려면, 사전에 위탁사무 선정의 사전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, (민간)위탁사무의 내용, 기간, 비용, 수탁자 선정방법 등을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(민간)위탁 추진 여부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 그 후 예산안을 의결받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, 이러한 사전절차가 끝난 후,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가 될 것임.
 - 제출부서는 동의안에 반영한 것과 같이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

서는 다양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갖춘 취·창업교육 전문기업이 본 사업을 수탁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.

- 현재 제출된 동의안의 세부내역을 보면, 인건비가 높지 않아 최소한의 유능한 인력이 배치될지는 다소 의문임.
- 이 외 동의안과 별건이나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서면으로 보고된 “하나금융그룹과 함께 하는 강남구 신중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센터 구축 협약서” 를 보면, 협약서 제3조에 강남구와 하나금융 그룹 간에 신중년 디지털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, 신중년 디지털 일자리의 창출 및 발굴, 신중년 창업 및 재취업의 지원 그리고 센터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해 하나금융그룹에서 센터 내부 인테리어를 조성해 줄 것을 약속하고 있음.
 - 인테리어 가액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나, 이는 일종의 지자체의 기부금품(찬조금품) 수령에 해당할 수 있어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(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·접수 제한 등)과 관련될 수 있을 것임.
- 본 동의안은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취지와 목적을 살려 강남구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위탁사업안으로,
 - 강남구 행정조직이 직접 센터를 직영운영하는 것보다 민간 취·창업 전문기관 등이 공모에 참여하여 전문적으로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,
 - 자칫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이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수탁 기간을 2년으로 설정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것임.
- 다만, 우수한 전문기관 선정을 위해서는 인건비가 다소 증액될 필요는 없는지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붙임 강남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(가칭) 민간위탁 동의안. 끝.

강남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(가칭)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52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3. 9. 27.
제출자 : 강남구청장
제출부서 : 일자리정책과

1. 제안이유

“강남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(가칭)”는 신중년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여 새로운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재취업에 필요한 직무능력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조성한 센터로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법인, 단체 등에게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승인 및 동의)에 따라 강남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강남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(가칭) 민간위탁 사업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, 제6조, 제8조
-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3조
-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
○ 추진 필요성

-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사무는 민간의 전문지식 및 다양한 경험, 노하우를 활용하여 신중년 세대의 새로운 일자리 진입을 돕는 취·창업 교육 및 취업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,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인(단체)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

다.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

- 강남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
- 프로그램 운영(취·창업 교육, 컨설팅, 인턴십, 일자리 발굴·연계, 사회활동 지원 등)
- 국내외 기업, 공공, 민간자원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
- 창업지원 및 사후관리(교육, 자금, 판로지원 등)
- 그 밖에 신중년 일자리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무 등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43, 더피나클강남 지하2층
- 규모 : 230.3㎡(69.7평)
- 위치도



마. 민간위탁 기간 : 2024. 1. 1. ~ 2025. 12. 31.(2년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·결정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: 765,184천원

통계목	구분	세부집행내역	예산액 (단위 : 천원)
총계			765,184
민간 위탁금	소 계		765,184
	인건비	· 팀장급 3,200,000원×1명×12월=39,600,000원	38,400
		· 대리급 2,800,000원×1명×12월=36,000,000원	33,600
	사회보험	· 사회보험 780,000원×12월=9,828,000	9,360
	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	· 직업훈련 교육비 7,290원×100명×5시간×60일=218,700,000원	218,700
	신중년 인턴십 운영	· 인건비 9,860원×3시간×28일×3개월×50명=124,236,000원	124,236
		· 사회보험 107,672원×3개월×50명=16,150,800원	16,151
	일자리 발굴 및 연계 프로그램	· 찾아가는 일자리 지원 서비스 400개기업×50,000원=20,000,000원	20,000
		· 이직, 전직 교육 프로그램 운영 7,290원×60명×4시간×20일=34,992,000원	34,992
		· 일자리 박람회 및 채용직무 설명회 참여 2,500,000원×2회=5,000,000원	5,000
	창업 교육 프로그램	· 창업 교육비 7,290원×60명×5시간×46일=100,602,000원	100,602
	생애재설계 상담·교육 프로그램	· 생애재설계 상담·교육 7,290원×150명×30시간=32,805,000원	32,805
		· 신중년 동아리 및 커뮤니티 지원 20,000원×50명×20회=20,000,000원	20,000
	홍보비	· 리플릿 제작 2,000원×300개×5회=3,000,000원	3,000
		· 포스터 제작 6,000원×120개×5회=3,600,000원	3,600

통계목	구분	세부집행내역	예산액 (단위 : 천원)
		· 현수막 제작 65,612원×30개×5회=9,841,800원	9,842
	사무운영비	· 공기청정기 임차 42,200원×5개×12월=2,532,000원	2,532
		· 정수기 임차 55,005원×12개월=660,060원	661
		· 복합기 임차 176,000원×12개월=2,112,000원	2,112
		· 사무용품 등 일반수용비 800,000원×12개월=9,600,000원	9,600
		· 회계감사 수수료 1,000,000원×1회=1,000,000원	1,000
		공공운영비	· 인터넷 및 통신비 500,000원×12개월=6,000,000원
	· 전기료 및 수도요금 12,000,000원×12개월=14,400,000원		14,400
	· 무인경비 250,000원×12개월=3,000,000원		3,000
	시설장비 유지	· 냉난방기 등 유지관리 80,000원×10개×2회=1,600,000원	1,600
		· 시설유지 보수 300,000원×12개월=3,600,000원	3,600
	청소용역	· 청소용역비 2,800,000원×1명×12월=33,600,000원	33,600
	안전점검	· 안전점검 2,000,000원×2회=4,000,000원	4,000
	민간위탁 수수료	· 민간위탁수수료 7 52,391,660원×1.7%=12,790,658원	12,791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및 사회적·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

제6조(지원사업) 구청장은 중장년의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취업을 위한 상담과 정보 제공
2. 전직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및 훈련
3. 일자리 발굴 및 구직자와 연계
4. 민간부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일경험 및 인턴십 사업
5. 창업 상담과 교육
6. 창업 자금과 판로 지원
7. 취업 및 창업 지원,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홍보
8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8조(중장년 일자리 교육·상담시설 설치 및 운영) ① 구청장은 교육·상담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남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효과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,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·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○ 서울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 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
③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④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작성자 :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행정7급 김현정(☎ 02-3423-5563)